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329
------	------

제출일자 : 2023. 5. 31.

제 출 자 : 금 천 구 청 장

1. 제안이유

조례 적용 범위에 주최·주관자가 없는 지역축제·행사를 포함하고 이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수립 등의 규정을 마련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주최·주관하는 자가 없이 자발적으로 500명 이상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행사에 대한 적용범위 확대 규정(안 제3조제1항제3호 신설)
- 나.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최·주관 없는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수립 규정 (안 제5조제4항 신설)
- 다. 행사보험가입 및 행사개최 전체비용 대비 1퍼센트 이상 안전관리비 확보에 관한 권고사항 규정(안 제9조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제66조의11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9, 「공연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없음

다. 합의기관: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별도첨부
- 2) 입법예고(2023. 4. 26. ~ 2023. 5. 16.) 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도첨부
- 4) 규제사전심사: 원안동의(기획예산과)
- 5)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민원감사담당관)
- 6) 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동의(가족정책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주최·주관하는 자가 없이 자발적으로 500명 이상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행사

제5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구청장은 옥외행사를 주최·주관하는 자가 없으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항에 준하여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제10조 및 제11조로 하고,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주최자에 대한 권고사항) 구청장은 옥외행사 주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1. 옥외행사에 참여하는 모든 행사관계자 대상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이상의 행사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

2. 행사개최 전체비용 대비 1퍼센트 이상의 안전관리비 확보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옥외행사에 적용한다.</p> <p>1. 2. (생략)</p> <p><u><신설></u></p> <p>②·③ (생략)</p> <p>제5조(안전관리계획) ① ~ ③ (생략)</p> <p><u><신설></u></p> <p>④ (생략)</p> <p><u><신설></u></p>	<p>제3조(적용범위) ① ----- ----- --.</p> <p>1. 2. (현행과 같음)</p> <p>3. <u>주최·주관하는 자가 없이 자발적으로 500명 이상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행사</u></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5조(안전관리계획)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u>구청장은 옥외행사를 주최·주관하는 자가 없으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항에 준하여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u></p> <p>⑤ (현행 제4항과 같음)</p> <p>제9조(주최자에 대한 권고사항) <u>구청장은 옥외행사 주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u></p> <p>1. <u>옥외행사에 참여하는 모든 행사관계자 대상으로 「자동</u></p>

<p><u>제9조</u> · <u>제10조</u> (생략)</p>	<p><u>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이상의 행사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u></p> <p><u>2. 행사개최 전체비용 대비 1퍼센트 이상의 안전관리비 확보에 관한 사항</u></p> <p><u>제10조</u> · <u>제11조</u> (현행 <u>제9조</u> 및 <u>제10조</u>와 같음)</p>
--------------------------------------	--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 개정에 따른 발생 비용이 없으므로 비용 추계서 미첨부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주민안전과 재난총괄팀 김종현
연 락 처	2627 - 2933

현행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01. 10.] [서울특별시금천구조례 제1300호, 2021. 7. 9.,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에서 열리는 공연, 축제 등의 옥외행사에 대하여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옥외행사”란 주된 행사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하는 공연, 축제, 체육 등과 같은 행사를 말한다.
2.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옥외행사에 적용한다.<개정2023.1.10.>

1.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행해지는 공연
 2. 순간 최대 관람객이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으로 예상되는 축제, 체육 등의 옥외행사
- ② 제1항 각 호에서 1,000명 이상의 경우에는 「공연법」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련법에 따른다.<신설 2023.1.10.>
- ③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신설 2023.1.10.>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개최되는 옥외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등 안전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2 023.1.10.>

제5조(안전관리계획) ① 구청장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가 출자·출연한 기관(이하 “출자·출연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3.1.10.>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옥외행사의 개요
2. 옥외행사 장소 및 주변 시설 등의 위험 요소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3. 옥외행사 장소·시설 등을 관리하는 사람 및 관리 조직과 임무에 관한 사항
4.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5. 안전관리인력의 확보 및 배치계획
6. 비상시 대응요령, 담당 기관과 담당자 연락처
7. 그 밖에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에게 옥외행사의 후원을 신청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구청장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제1항에 준하여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것을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신설 2023.1.10.>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시행을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23.1.10.>

1. 삭제<2023.1.10.>

2. 삭제<2023.1.10.>

3.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옥외행사의 경우

제6조(안전점검) ① 구청장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옥외행사 개시 1일 전까지 행사장소 및 주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한 사항은 구 관할 소방서 및 경찰서 등 안전관리 유관기관에 합동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3.1.10.>

② 구청장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옥외행사를 주최 또는 주관하려는 자가 제5조제3항 및 제4항의 권고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점검을 요청한 경우에는 제1항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3.1.10.>

③ 구청장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난이나 사고 예방을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안전조치 또는 안전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3.1.10.>

제7조(긴급안전조치) 구청장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옥외행사에서 재난이나 사고가 예상되는 등 행사 진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행사를 중단하는 등 긴급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3.1.10.>

제8조(안전관리요원 배치) ① 구청장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옥외행사 참여자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개정 2023.1.10.>

②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23.1.10.>

1. 배치장소, 임무 등에 대하여 사전교육을 실시
2. 안전관리요원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복장 착용
3. 응급·구조를 위한 안전관리요원은 안전관련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배치

③ 구청장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제5조제3항 및 제4항의 옥외행사에 대하여 안전관리요원 배치에 관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옥외행사 참여자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청장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이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개정 2023.1.10.>

제9조(지원요청) ① 구청장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옥외행사장의 질서유지와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 관할 경찰서에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3.1.10.>

② 구청장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옥외행사에 따른 인명 피해 예방 및 응급구호를 위하여 구 소재 의료기관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3.1.10.>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제1180호, 2021.7.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300호, 2023.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와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6조의11(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면 해당 지역축제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이행 실태를 지도·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축제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전에 통보하고,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내용, 수립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9(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① 법 제66조의11제1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축제”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축제를 말한다.

1. 축제기간 중 순간 최대 관람객이 1천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축제
2. 축제장소나 축제에 사용하는 재료 등에 사고 위험이 있는 지역축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축제

가. 산 또는 수면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

나. 불, 폭죽, 석유류 또는 가연성 가스 등의 폭발성 물질을 사용하는 지역축제

② 법 제66조의11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이하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에는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축제의 개요
2. 축제 장소·시설 등을 관리하는 사람 및 관리조직과 임무에 관한 사항
3.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4. 안전관리인력의 확보 및 배치계획
5. 비상시 대응요령, 담당 기관과 담당자 연락처

③ 법 제66조의11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는 자가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려면 개최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소방서 및 경찰서 등 안전관리 유관기관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④ 법 제66조의11제3항에 따라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는 자는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축제 개최일 3주 전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축제 개최일 7일 전까지 변경된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이 효율적으로 수립·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역축제 안전관리 매뉴얼을 작성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세부적인 내용 및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 「공연법」

[시행 2022. 7. 19.] [법률 제18758호, 2022. 1. 18., 일부개정]
제11조(재해예방조치) ① 공연장운영자는 화재나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공연장 종업원의 임무·배치 등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 받은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전단에 따라 신고를 받은 재해대처계획을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된 재해대처계획의 내용이 미흡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라 재해대처계획의 보완을 요구받은 공연장운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 보완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다시 신고하여야 한다.

④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관람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의 재해예방조치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에는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5까지에 해당하는 안전관리비, 안전관리조직, 안전교육 및 피난안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⑥ 그 밖에 공연장의 재해예방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연법 시행령」

[시행 2022. 8. 9.] [대통령령 제32868호, 2022. 8. 9., 타법개정]
제9조(재해대처계획의 신고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연장 시설 등을 관리하는 자의 임무 및 관리 조직에 관한 사항
2. 비상시에 하여야 할 조치 및 연락처에 관한 사항
3.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4. 법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4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안전관리비, 안전관리조직 및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공연장운영자(이하 “공연장운영자”라 한다)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연도의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재해대처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계획을 적용하기 전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연장운영자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공연장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공연장 등록 신청과 함께 해당 연도의 재해대처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 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1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해당 시설이나 장소 운영자와 공동으로 공연 개시 14일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사항과 안전관리인력의 확보·배치계획 및 공연계획서가 포함된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공연 7일 전까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